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: 이소라, 김지향, 민병주,
박승진, 박영한, 박철성,
아이수루, 윤종복, 이병도,
, 이영실, 정준호, 한·신,
홍국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저탄소 보고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인쇄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노력 책무를 규정함.(안 제24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(저탄소 사무실 조성)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,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,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4조의2(저탄소 사무실 조성) ①</u></p> <p><u>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,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,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</p>